

포렌직약과학자 전문인력양성단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산학협력 사업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포렌직약과학자 전문인력양성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사업단은 포렌직 약과학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 발전을 목표로 4단계 BK21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지원대학원생들의 연구 활성화 및 교육 사업
2. 포렌직 약과학자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연구 및 시스템 구축사업
3. 포렌직 약과학자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제공을 통한 전문인재양성사업
4. 산·학·관 협동 연구 및 교육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품질 고도화 사업
5. 그 밖에 사업단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소재지) 사업단은 계명대학교 보산관 내에 둔다.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4조(부서 및 업무)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단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업단 사업비의 세출·입 예산편성 및 집행
3. 대응자금 확보 및 사업성과 평가
4. 그 밖에 4단계 BK21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

제5조(조직 및 임면) ① 사업단의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장 및 신진연구인력(박사후연구원),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업단장은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사업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참여교수는 대학원 약학과 소속의 교수로 겸직한다.
- ④ 신진연구인력(박사후연구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총장이 임용하며, 사업단의 연구를 전담한다.
- ⑤ 전담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한다.
- ⑥ 신진연구인력(박사후연구원), 직원의 자격, 직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② 당연직위원은 사업단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
2. 사업의 주요 변경사항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 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1조(재정) 사업단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우리 대학교 사업지원금
3. 산·학·연 위탁과제 연구비
4. 기타 수입

제12조(회계 및 회계연도) 사업단의 회계는 지원기관의 사업관련 규정에 따르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산학협력단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예산편성) 사업비 등의 예산편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회계처리)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결산보고) 산학협력단 회계관련 규정 및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개인정보 보호) 사업단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문서 및 상담자료, 사업장 명부, 개인별 명부 등 관련 정보는 관계법령에 맞추어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센터 시설 등의 이용) ① 사업단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단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제 규정과 지원기관의 규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